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88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용혜인·민병덕·이주희
정춘생·김승원·소병훈
전용기·김한규·황명선
황운하·이수진·윤종오
정혜경·백혜련·한준호
김현정·김남희·허영
의원(18인)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에 해상풍력발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서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마련, 인허가 편의, 기술·금융·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과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은 도입

되지 아니함.

또 주요국들이 해상풍력발전을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은 가치사슬 전체에서 민간 및 해외 사업자가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시 국가가 최대 20% 이내에서 해당 발전사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여, 공유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이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으로서 “공유지분” 정의 규정을 도입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지분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다. 공유지분 수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 2제3항 신설).
- 라. 발전 공공기관 우대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 5호 신설).
- 마. 발전 공공기관 우대의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정책 금융의 제공, 기술개발 지원, 인력 전환,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의 우대 등 지원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 바. 공유지분이 확보된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유지분”이란 이 법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절차의 지원 등 공공자원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하는 해당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유지분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다만, 최대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 지분의 형태,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을 “공공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제5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을 “공공기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5.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을 우대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 운용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해상풍력발전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2. 정책 금융의 제공

3. 해상풍력발전 기술의 개발

4. 화력발전 인력의 해상풍력발전으로의 전환 배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
관리계획에서 우대

6. 그 밖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지원

제37조제3항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공유지분을 확
보한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은 국가가 확보한
공유지분의 크기에 따르되 구체적인 감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공유지분”이란 이 법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절차의 지원 등 공공자원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하는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한다.</u></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 4. (생략)</p> <p>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u>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u>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p>

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8조의2(공유지분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다만, 최대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 지분의 형태,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제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우대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공
공기관은-----.

1. ~ 4. (현행과 같음)

5.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을 우대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운용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해상풍력발전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2. 정책 금융의 제공

3. 해상풍력발전 기술의 개발

4. 화력발전 종사 인력의 해상풍력 발전으로의 전환 배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 운영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4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③ -----
-----공공
기관-----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은 국가가 확보한 공유지분의 크기에 따르되 구체적인 감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